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점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체계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 점자교원 양성과 점자교육원 지원, 점자능력 검정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점자법」이 개정(법률 제20359호 (2024.2.27. 일부개정, 2025.2.2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및 심사 절차 신설(안 제3조, 제4조)
- 나. 점자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신설(안 제5조)
- 다. 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 신설(안 제6조)
- 라. 점자능력의 검정을 위한 점자능력 검정시험 실시 방법 및 응시수수료 등 신설(안 제7조, 제8조)
- 마.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11조)
- 바.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사전심사 요청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제9조와 제10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자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고급 등급에 합격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 점역·교정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할 것

2. 점자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가. 다음 세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는 것

1)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2) 별표 1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할 것

나. 별표 2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점자 교육이 개설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3. 점자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점자 교육이 개설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점자교원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자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필수이수시간 등 확인) ①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점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강의실, 사무실 및 점자 교육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

②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점자교육원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 교육 및 사용촉진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전년도에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점자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자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점자능력 검정시험(이하 “점자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하며,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과 합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
3.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1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 제4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4. 제7조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과 합격 기준(제7조제3항 관련)

등급	평가 영역	배점	검정 방법	합격 기준
초급	점자 읽기	100점	가. 구술 및 필기 시험 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각 영역에서 5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70퍼센트 이상 득점
	점자 쓰기	100점		
중급	점자 읽기	100점		
	점자 쓰기	100점		
고급	점자 읽기	100점		
	점자 쓰기	100점		
등급별 총점		200점		

[별표 2]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관련)

영역		교과목(예시)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1	점자 및 어문규범	한글점자, 수학·과학점자, 영어점자, 어문규범	20시간
2	점자교육론	점자교수이론, 점자읽기교육법, 점자쓰기교육법, 점자교육과정론, 점자교재교구개발론, 점자평가론, 촉각이론, 보조공학론	70시간
3	점자교육실습	점자교육 참관, 점자교육 실습	30시간
합계			120시간

비고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교과목 명칭이 위의 교과목(예시)와 다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해당 교과목으로 본다.

점자교원 자격증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자 격:

위 사람은 「점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목적			
설립연도			

「점자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점자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2. 점자교육원 운영계획서 1부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심사 및 결정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통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u>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1. <u>점자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u> 가. <u>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u> 나. <u>별표 1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고급 등급에 합격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 점역·교정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할 것</u> 2. <u>점자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u> 가. <u>다음 세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는 것</u>

1)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2) 별표 1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으로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할 것

나. 별표 2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 시간을 이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 수업이 개설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점자 교육이 개설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신설>

3. 점자 교육이 개설된 국가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점자 교육이 개설된 「장애
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
시설

5.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요
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
는 단체에서의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
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
람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자교원
의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
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점자교원의 자격 유무
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신설>

<신설>

에 따라 점자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점자교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양성과정 운영 기관의 필수 이수시간 등 확인)

①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
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모두 갖추는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 것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점자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
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
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이 있는 사
람

나.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일 것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제

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

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

자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강의실, 사무실 및 점자 교육

장비 등을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

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점자교육원 운영계획서

3.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적은 서류(실적이 있

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 교육 및 사용촉진 업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점자 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전년도에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 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

<신설>

유로 점자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자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이하 “점자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 응시 수수료 등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하며,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과 합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신설>

제8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및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제3조~제4조 (생략)

<신설>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9조~제10조(현행 제3조부터 제4조까지와 같음.)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

3.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u>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u> 2. <u>제3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u> 3. <u>제4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u> 4. <u>제7조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 시험에 관한 사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38